

공정위,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채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4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기존의 채무보증 해소시한의 연장사유를 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공정거래법에서 1997년 및 1998년에 계속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소시한의 연장사유를 2000년 3월말 현재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중이거나 피보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로 정하고(개정령(안) 제17조의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채무보증규제제도의 개선에 맞추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시의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회사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기한을 지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며(시행령 개정(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및 제23조의2)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은 3월 24일(화)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④

현행	개정안
<p>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증권관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당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u>.....</p>
<p>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u>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u></p>	<p>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u>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u></p>
<p>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생략)</p> <p>1. ~ 3. (생략)</p>	<p>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 삭제 ></p> <p>1. ~ 3. < 삭제 ></p>
<p>제17조의3(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의 인정신청) (생략)</p>	<p>제17조의3(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의 인정신청) < 삭제 ></p>
<p>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p> <p>① ~ ② (생략)</p>	<p>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p> <p>① ~ ② < 삭제 ></p>
<p>제17조의5(채무보증제한제외대상의 요건)</p> <p>① <u>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 2. (생략)</p> <p>② <u>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u></p>	<p>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p> <p>① <u>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3호</u>.....</p> <p>.....</p> <p>.....</p>

현행	개정안
<p>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6. (생략)</p> <p>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u>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말한다.</u></p> <p>〈신설〉</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 2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제6호 <u>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u></p> <p>제17조의7(기존 채무보증 해소시한의 연장요건) 법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2000년 3월 31일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u>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중인 경우</u></p> <p>2.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u>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 신청되어 2000년 3월 31일 현재 이들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u></p> <p>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p>
<p>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당해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u></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u>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u></p> <p>③ <u>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u></p>	<p>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u></p> <p>③ <u>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신설,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u></p>

현행	개정안
<p>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② ~ ③ (생략)</p> <p>제23조의2(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생략)</p> <p>1. ~ 3. (생략)</p>	<p>.....</p> <p>.....</p> <p>.....<u>다만, 지정일 이후에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2(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삭제></p> <p>1. ~ 3. <삭제></p>

바로 잡습니다.

◎ 공정경쟁 제30호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중 p.26 - '공정거래법 신구조문비교표'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現 行	改 正 内 容
<p>第10條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생략)</p> <p>第15條(탈법행위의 금지) 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p> <p>② (생략)</p> <p>第16條(시정조치) 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p> <p>1. (생략)</p> <p>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이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第10條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생략)</p> <p>第15條(탈법행위의 금지) 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p> <p>② (현행과 같음)</p> <p>第16條(시정조치) 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p> <p>1. (현행과 같음)</p> <p>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이하 삭제></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